

의안번호	2213283
의 퇴 인	정준호의원
회 답 일	2025.11.13.
추 계 번호	25B5297
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규 골재채취업자 의무교육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, 골재 품질검사 비용과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9,100만원, 2031년 3억 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4억 9,100만원(연평균 2억 9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골재채취업자의 교육 등 (안 제18조의2 신설)	85	87	89	91	92	444	89
골재의 품질기준 (안 제22조의4)	205	207	209	211	214	1,047	209
합계	291	294	298	302	306	1,491	298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신설 (골재채취업자의 교육 등)	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(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윤리, 품질,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.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(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이 교육을 받아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, 품질,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외의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, 골재채취와 관련된 기술능력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·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제4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,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(제5항)	의무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·훈련을 대행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2	안 제22조의4 신설 (골재의 품질기준)	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<u>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(제2항)</u>	의무규정
	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8항 신설) 1. 골재 품질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 2.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18조의2 신설 (골재채취업자의 교육 등)	○	•(추계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
2	안 제22조의4 신설 (골재의 품질기준)	○	•(추계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 및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(안 제18조의2 신설) 개정안은 법 제14조제1항¹⁾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윤리, 품질, 재해 및 실무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, 그 외의 기능인력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능력 보급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·훈련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개정안 시행 시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교육·훈련의 구체적인 대상, 방법, 기간 및 재원부담 비율 등 세부 사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비용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불확정적이므로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함

1) 제14조(등록)

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(안 제22조의4 신설) 개정안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과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골재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고, 골재 품질검사·골재품질 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현시점에 비용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확정적이므로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함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²⁾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골재채취업 교육 실시비용(안 제18조의2제1항)

-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연 4회, 회당 16시간(8시간×2일)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회당 교육비 단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
 - (교육대상자 수) 최근 5년간 골재채취업 신규 등록업체수는 연평균 41개로,

2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2025.9.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0	1.9	2.0	2.0	2.0	2.0

추계기간 동안 이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-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신규 등록자는 교육에 1회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골재채취업 신규 등록업체 수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2	2024	평균
골재채취업 신규등록업체 수	54	32	43	37	41	41

- (교육비용 단가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분기별 골재채취업자 교육실시 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당 5.0백만원 규모로 추산되며,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
[표 3] 골재채취업자 의무교육 실시비용 단가 세부내역

구분	단가(원)	산출기준	수량	교육비 (A, 회당, 원)	연간비용 (A×4회, 백만원)
강사료	590,000	23만원×1시간+12만원×3시간	4인	2,360,000	-
인건비(행정)	447,288	2명(1인: 223,644원)	2일	894,576	
강의실 임대료	300,000	1일	2일	600,000	
교재비	30,000	교재+필기구 등	1025인	307,500	
교육지원비	27,000	식비+교통비(1일 27천원)	1025인	276,750	
실습비	500,000	재료비 및 장비임차료	1식	500,000	
기타	50,000	잡비	1식	50,000	
합계				4,988,826	20

주 1. 강사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일반(I) 적용, 1인 4시간 강의 기준

2. 인건비는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건설 초급기술자 단가 적용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4] 골재채취업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골재채취업 신규등록업체 의무교육 실시비용	21	21	22	22	22	108

나. 기능인력 교육 실시비용(안 제18조의2제3항)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능인력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능력 보급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직접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전체 골재채취업 기술인력의 10%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함
- (대상) 골재채취업 기술인력은 약 2,600명으로 추산되며(702개 운영사 2024년 기준, 국토교통부 제출자료) 이 중 약 10%인 250명에 대하여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교육은 회당 50명 기준으로, 연 5회(회당 24시간, 8시간×3일)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(단가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능인력 교육훈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당 1,243만원으로 나타나며,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
[표 5] 골재채취업자 기술교육·훈련 실시비용 단가 세부내역

구분	단가(원)	산출기준	수량	교육비 (B, 회당, 원)	연간비용 (B×5회, 백만원)
강사료	590,000	23만원×1시간+12만원×3시간	6인	3,540,000	-
인건비(행정)	447,288	2명(1인: 223,644원)	3일	1,341,864	
강의실 임대료	300,000	1일	3일	900,000	
교재	30,000	교재+필기구 등	50인	1,500,000	
교육지원비	81,000	식비+교통비(1일 27천원)	50인	4,050,000	
실습비	1,000,000	재료비 및 장비임차료	1식	1,000,000	
기타	100,000	잡비(명찰 수료증 등)	1식	100,000	62
합계				12,431,864	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능인력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능력 보급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 직접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6] 골재채취업 기능인력 교육·훈련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골재채취업 기능인력 교육· 훈련 실시비용	65	66	67	69	70	336

다. 골재의 품질기준(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)

- (골재 품질검사 비용 지원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골재 품질검사는 골재생산실적이 있는 등록업체의 약 10%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함³⁾
 - (물량) 수시검사 물량은 골재 정기검사 대상(2023년 기준 753개, 2024년 702개, 국토교통부 제출자료)의 최근 2년간 평균 728개소의 10%인 73개 소로 가정함
 - － 수시검사 물량 73개소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(단가) 검사단가는 골재 2품목 검사 기준으로 업체당 1.3백만원으로 가정 하며,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 - － (콘크리트용) 1품목 1,019천원, 품목 추가시 1품목당 315천원 추가. (아스콘용) 1품목 1,051천원, 추가시 1품목당 347천원 추가
- (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사업비) 개정안에 따라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 비용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므로, 국토 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골재품질향상 관련 유사사례 연구용역 평균 사업비는

3) 현재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매년 품질검사를 받고 있으며, 품질검사 비용은 골재 업체가 부담하며, 수시검사의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부담으로 수행중임

1억 400만원 수준으로, 추계기간 동안 연간 1건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7] 골재품질향상 관련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

	과제명	소요금액(백만원)
1	콘크리트용 골재 토분 제거 공정기술 개발	80
2	선별과쇄골재 품질 성능 등급화 및 품질 성능 등급 기준 제·개정	100
3	콘크리트용 골재의 토석(원재료)에 대한 품질기준 연구	100
4	혼합골재 자원화 및 활성화 연구	140
5	석회암 골재 활성화 연구	100
평균		104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골재 품질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과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8] 골재채취업체 수시검사 및 품질향상·연구사업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시검사 물량	73	73	73	73	73	365
수시검사 단가	1.4	1.4	1.4	1.5	1.5	-
수시검사 비용 (A=a×b)	101	103	105	107	110	527
연구비용(B)	104	104	104	104	104	520
합계(A+B)	205	207	209	211	214	1,047

라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규 골재채취업자 의무교육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, 골재 품질검사 비용과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9,100만원, 2031년 3억 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4억 9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골재채취업 신규등록업체 의무교육 실시비용(a)	21	21	22	22	22	108
골재채취업 기능인력 교육·훈련 실시비용(b)	65	66	67	69	70	336
소계(A=a+b)	85	87	89	91	92	444
골재채취업자 수시검사비용 지원(c)	101	103	105	107	110	527
골재품질향상 연구사업 지원비(d)	104	104	104	104	104	520
소계(B=c+d)	205	207	209	211	214	1,047
추가재정소요 (A+B)	291	294	298	302	306	1,491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